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9
----------	------

2022년 4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8일 최선 의원(찬성109명)
2.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상정일자 :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3월 30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최선 의원)

1. 제안이유

-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동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사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청소년 부모 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내용을 정함(안 제9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1 조례안의 개요, 제정 필요성 및 관련 입법동향

- 동 조례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포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021년말 서울시내 부모 모두 24세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은 총 73세대이며, 부나 모가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144세대로 청소년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¹⁾ 가정은 총 217세대임(각 구별 현황은 별첨1 참고).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가정 현황 >

구분	계	청소년한부모 (부 또는 모가 만24세이하)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만24세이하)			소계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세대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전체	217	73	238	144	323	132	29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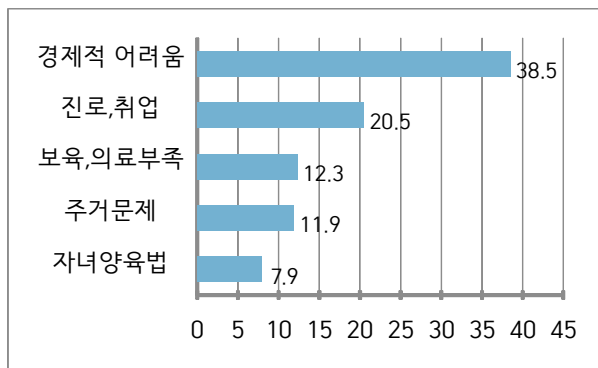
-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²⁾ 이들의 61%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원

1) 보고서에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부나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를 통칭하여 ‘청소년(한)부모’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정의규정에 따라 조례안 검토 시에는 ‘청소년부모’로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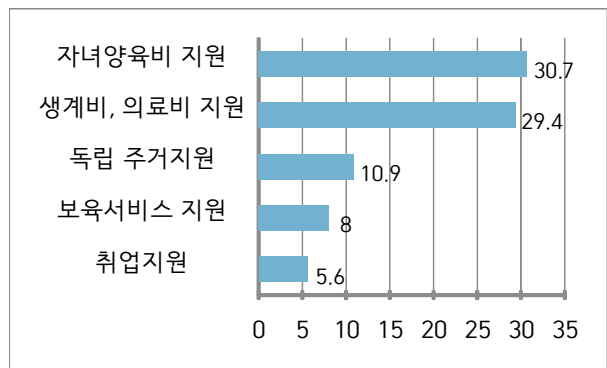
2) 은주희·임고은(2019),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한)부모들은 학업,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자녀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청소년(한)부모와 그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음.



< 출산·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



<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 >

- 한편 동 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동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가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으로 자녀양육, 교육, 취업, 주거 등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이 발의(2021. 5. 28.)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23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부모 모두 24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³⁾가 규정되고, 청소년부모지원을 위한 별도의 장(제5장의2 청소년부모지원)을 신설하여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세부 조문 내용 붙임2 참조).

2 주요사항 검토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1조~제3조)

- 동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용어 정의(안 제2조)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청소년부모”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미혼을 포함)’를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음.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상위법 및 조례안에 따른 용어의 구분>

용어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근거 조항	동 조례안제2조제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을 포함한다)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미혼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미혼을 포함한다)

- 동 개정안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법」제2조제6호에서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한 것과 상이하고, ‘10청소년부부’를 법률혼 및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절차적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령해석 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과 조례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동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청소년)로 한정하거나, 제정안의 취지에 맞춰 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부나 모가 청소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되 “청소년부부등”의 별도의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안 제4조)

- 안 제4조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인 청소년부모 가정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가정까지 포괄하고 있어 해당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한부모가족지원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
 -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6조4)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안 제정시 집행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제정안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거나, 동 제정안에서 청소년 한부모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입법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지원 대상 관련(안 제5조)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과 부나 모가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포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 지원 기준을 재량사항으로 정한 것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하라는 것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지원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거나 축소하여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안될 것임.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안 제6조 및 제7조)

- 안 제6조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동 조례안의 목적인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1년마다 수립하는 단기적 계획으로, 조례안에는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주기,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이나 정책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거기반(evidence driven) 정책 추진을 위한 실증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동조례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구성원인 청소년과 아동 등이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민감정보 등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정보가 공개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지원센터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청소년부모나 그 자녀와 관련된 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도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관련(안 제8조)

- 안 제8조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문에 응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5)에 따르면 위원회 목적과 기능 및 성격 외에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존속 기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소집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별도의 규칙 등으로 정해야 할 것임.
 -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6)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
-
-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6)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존속기한을 정하여 부칙규정 등에 신설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지원사업 관련(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해 청소년 임신부 대상 임신·출산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대상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가정 대상 주거 지원사업,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공 근거를 명시(세부 조문 내용 붙임2 참조)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급시 추가적인 복지 급여 실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세부 조문 내용 붙임3 참조).
- 현행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사업은 상위법과 달리 자녀양육 관련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관련부서는 동 조례 시행시 청소년부모 가정에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녀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돌봄이나 양육지원 사업 등의 추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제2항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청소년부모 가정의 절대 규모가 219세대로 적고, 자치구별 청소년부모 가정의 분포가 상이한 바, 지역별·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9조제3항은 인터넷 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인 청소년부모 가정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안 제10조 및 제11조)

- 안 제10조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의 전담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상담, 자녀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미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울시 가족센터⁷⁾ 및 한부모가족지원센

7) 서울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2007년에 개소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

터⁸⁾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센터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바 기존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

조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2022년부터 신규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새로운 명칭임.

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혼모자·미혼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실시

확하게 될 우려도 있는바⁹⁾, 민간위탁이 본래의 목적대로 순기능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 중복지원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안 제12조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서의 형평성 문제 소지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안 제13조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나 청소년의 시기에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이 기본이 되고, 동 조례안에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기관에 교육청과 자치구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종합 의견

- 동 제정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부재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

9)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부모 모두 24세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청소년부모’라는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과 상이하며, 「한부모가족지원조례」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 체계의 충돌 우려가 있고,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보다는 기존 센터 활용 등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붙임1>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가정 현황

구분	계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만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부 또는 모가 만24세이하)					
				소계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세대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전체	217	73	238	144	323	132	292	12	31
종로구	2	-	-	2	4	2	4	-	-
중구	-	-	-	-	-	-	-	-	-
용산구	6	2	6	4	9	3	6	1	3
성동구	3	2	6	1	2	1	2	-	-
광진구	4	3	9	1	5	1	5	-	-
동대문구	7	1	4	6	15	6	15	-	-
종랑구	11	3	9	8	16	7	14	1	2
성북구	12	4	12	8	16	8	16	-	-
강북구	11	5	15	6	18	4	10	2	8
도봉구	13	7	26	6	15	6	15	-	-
노원구	9	4	12	5	10	5	10	-	-
은평구	16	6	20	10	22	10	22	-	-
서대문구	14	1	4	13	27	13	27	-	-
마포구	7	-	-	7	14	7	14	-	-
양천구	9	-	-	9	23	7	19	2	4
강서구	25	11	37	14	30	12	25	2	5
구로구	11	4	12	7	16	7	16	-	-
금천구	6	2	6	4	10	3	8	1	2
영등포구	4	-	-	4	8	4	8	-	-
동작구	8	3	9	5	10	5	10	-	-
관악구	11	4	13	7	15	7	15	-	-
서초구	1	1	3	-	-	-	-	-	-
강남구	4	2	7	2	5	2	5	-	-
송파구	12	5	18	7	15	6	13	1	2
강동구	11	3	10	8	18	6	13	2	5

<붙임2>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붙임2>

「한부모가족복지법」 상 청소년한부모 지원 관련 조문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2>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능이 유사한 기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수정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센터의 기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9
----------	------------

제안년월일 : 2022년 3월 30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능이 유사한 기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센터의 기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안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청소년부모</u>”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을 포함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미혼을 포함한다)</u></p> <p>2. (생략)</p> <p>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u>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후단 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u>청소년부모</u>”란 <u>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u></p> <p>2. (원안과 같음)</p> <p>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p> <p><u>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u></p>

원 안	수 정 안
② (생 략)	<u>서 대신 할 수 있다.</u>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립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